

1. 개정이유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2.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 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에 부존재 및 진정·질의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정보공개 청구서”를 “정보공개청구서 (약호 : A249)”로, 정보공개 청구 안내를 위한 “QR코드”를 추가하여 별지 1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제11조의2”로, 같은 서식 중 “통지합니다”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로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0. 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약호: A249)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진정·질의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의사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